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Preventive Countermeasures of Child Abuse Committed by Biological Parents by information analysis.

Chae-Hyoung Ryu*, Hyun-Seok Yoon**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urrent phenomenon of child abuse crimes based on the information gathered by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agnose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by biological parents based on the analyzed information and propose measures against it.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easures are needed for child abuse committed by biological parents due to abuse concealment, continuity of damage, and inactive national intervention by considering punishment on attackers through national intervention, fundamental in-depth psychological counseling, therapeutic care, promoting recovery of victims, and ultimately continuous and regular management and monitoring as a long-terms measure. To do so, developing customized and individual educational programs and make them obligations can be first presented to identify child abuse in advance and build up preventive system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mily preservation. In addition,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at a fundamental level by performing various and active therapeutic treatments such as psychological treatment, mental treatment, or drug treatment gradually and through phases for biological parents who commit child abuse and contributing to recovering the relationship. Furthermore, proper protection and treatment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children victimized by abuse by extending professional children care facilities and adopting the professional family commission system as measures by separating family.

▶ Keyword: Child abuse, Child abuse committed by biological parents, Child abuse crim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Child welfare, Principle of family preservation I . Introduction.

I . Introduction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왔다. 특히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매년 20명 이상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것은 학대 행위자가 학대피해아동의 친부모인 경우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 가운데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86.1%로 가장 높았는데, 이것은 대다수의 학대피해아

동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그들의 절대적 보호자인 친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왔다는 것이다[1].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기관에서 빚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형식적이나마 예방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 가장 엄격한 감시자의 역할을 친부모에게 기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학대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돌아가 치유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있다. 하지만, 정작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여전히 ‘남의 집 가정사’로 여겨져 사회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미취

• First Author: Chae-Hyoung Ryu, Corresponding Author: Hyun-Seok Yoon.

*Chae-Hyoung Ryu (chaeh81@naver.com), Dept. of Police Law Administration, GwangJu University.

**Hyun-Seok Yoon (yhs@kwu.ac.kr), Dep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 Received: 2019. 05. 08, Revised: 2019. 05. 27, Accepted: 2019. 05. 27.

학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틀 이상 무단으로 빠지면 거주 가정을 찾아가고, 여기서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신고를 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권고에 불과할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친부모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방안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0년 동안 집계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범죄 현상을 진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어머니를 친부모로 정의하고, 계부·계모는 재혼을 통하여 맺어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 양부·양모는 입양절차를 통하여 맺어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원인과 특성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Theoretical Considerations

1. Significance of child abuse

1.1 concept

사전적 의미로서 '학대(虐待)'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상을 아동으로 범주화 한 것을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미국에서 '피해아동 증후군(battered-baby syndrome)'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아동학대를 소개하였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아동학대의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아동 증후군은 부모 혹은 책임이 있는 양육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정의되었으며,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신체적 학대에 국한되었다[2, 3].

이후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사회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심각하게 손상 및 손상할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의지를 가진 적극적 행위를 포함하여, 아동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을 인지하면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 부작위적 행위까지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4].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개념 정의하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같이 보호자 등의 적극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소극적 유기 및 부작위적 방임과

지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5]. 따라서 오늘날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술적 측면이나 법적 측면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2 type

「아동복지법」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하도록 신체적인 폭력 및 가혹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하여 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도구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등도 포함한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언어적인 폭력 및 정서적인 위협과 감금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성적인 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행하는 성적인 모든 행위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아동을 관찰하며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얻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및 추행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방임은 보호자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 양육자가 아동을 고의적으로 유기 및 물리적·교육적·의료적으로 방임하는 행위를 말한다[1].

1960년대에는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유형에 국한되었으나, 1970년대에는 정서적인 학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는 성적인 학대까지 포함하여 오늘날 아동학대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은 대체적으로 신체와 성적학대에 치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아동보호사업이나 연구에서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5].

이에 반해 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은 2013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6년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정서적 학대가 19.2%, 방임이 1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1].

2. Special feature of child abuse Committed by Biological Parents

2.1 concealment of abuse

학대피해아동의 입장에서 타인이 아닌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아동기의 기억은 평생에 걸쳐 치유되기 힘든 깊은 상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계부·계모, 양부·양모의 일 때보다, 오히려 친부모인 경우에는 자식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사랑의 매'라고 여기거나, "귀한 자식은 매를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은 떡을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자신의 학대 행위를 '훈육'으로 합리화해버리는 인식이 강하다. 때문에 아동학대사망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 하지 않는 한,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외부에서 제대로 인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훈육의 수단으로서 폭력을 용인하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아동에게 가하여지는 폭력적인 체벌이나 훈육을 빙자한 폭언을 직접 목격하더라도 가해자가 친부모일 경우에는 단순히 가정사로 치부되거나, 또는 낳아준 부모로서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축소·은폐되어 왔다.

특히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부모가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징계 또는 훈계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체적으로 가하여 지는 학대행위와 같이 시각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기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그 피해의 심각성이 즉각적으로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부적응자가 되는 등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남게 되어 더욱 심각하다.

또한 친부모에 의한 성적 학대의 경우는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피해 사실을 가정 밖으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가족 및 친인척에게 강요받거나, 다른 유형의 학대와 비교해서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대부분 은폐되어 발견이 어렵다. 또한 학대 사실과 관련하여 오히려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적 학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 Permanence of damage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다양한 학대 유형이 한 아동에게서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며, 이는 아동의 건강·발달·복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학대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아동이 성장 후 성인기까지 평생에 걸쳐 후유증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한 애착 형성으로 인하여 공감능력이 결여되거나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 및 무력감 등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안감과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으로 인한 학업성취 및 대인관계에 장애가 나타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피해 증상들이 아동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학대받은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서 학대행위자가 될 확률이 높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의 약 90퍼센트가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한 개인의 인생 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및 다음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잔인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6]. 또한 그러한 피해학대아동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게 되어 결국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어서 자신의 자녀에게 학대를 대물림하는 악순환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7].

2.3 Passiveness of national intervention

우리나라는 강한 유교적 전통문화의 영향으로 특히 친부모에 의한 체벌을 관대하게 받아드리고, 오히려 관습적으로 아동에 대한 엄격한 훈육방식이 장려되기도 했다. 때문에 자녀양육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절대 권리로 인식되어왔으며, 타인이나

국가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무너지고, 핵가족화, 가족해체, 가족갈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늘날 아동학대는 개인 가정사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아동학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엄벌하고자 했지만,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친부모 아동학대는 학대피해아동의 상당수가 가정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에 노출되는 심각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력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III. Causes and actual condition of biological child abuse

1. Causes of biological child abuse

1.1 Abuse by socio-economic factors

우리나라는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가족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가정내 위기는 경제적 빈곤,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 사회적 고립감과 낮은 자존감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져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인다[8].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스트레스와 아동학대가 관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9, 10]. 이는 부모가 실업자가 되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복지서비스가 열악하여 생계가 어렵거나, 사회적 억압 및 차별,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분노를 자신의 아이에게 해소함으로써 이것이 다양한 학대의 유형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Abuse as discipline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기 위해 가한 체벌에 대해서는 '사랑의 매'로 용인해 왔다. 심지어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정에 '회초리'를 두기도 하였는데, 이것을 마치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로 여겨온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친부모의 체벌이 얼마나 관대하게 인식되어 왔는지를 반증한다.

'회초리'의 사전적 의미는 '별로 아이를 때릴 때 쓰는 가늘고 긴 나뭇가지'로 정의되어 있는데[11],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엄격히 「아동복지법」상 '도구를 이용한 폭행'에 해당되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명 관광지에서 지역특산품으로 회초리를 판매하는 등 자녀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친부모는 도구를 이용하여 체벌하는 하는 것도 용인된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게다가 계부·계모, 양부·양모와 같이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비교적 쉽게 의심을 받는 반면, 친부모에 의한 체벌에는 매우 관대하고 허용적인 문화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더욱 발견되기가 어렵고, 학대행위자인 친부모 또한 죄의식보다는 자녀의 훈육을 위한 것으로 합리화하여 재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1.3 Abuse of addiction: Alcohol · drug · Game addiction

최근 우리사회의 중독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중독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과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중독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가 2,747건(5.8%)으로 나타나 총 20개 유형의 항목 가운데 5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알코올 및 약물로 인한 중독은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속성으로, 선행연구에서도 부모가 알코올중독자인 경우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방임의 경우 부모의 약물 및 알코올 중독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특히 어머니가 음주를 많이 할수록 교육 및 의료적 방임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3].

또한, 온라인 게임에 빠진 부부가 생후 3개월 딸을 아사시킨 사건(「한겨레」, 2010. 3.4.)과 게임에 빠진 친모가 PC방에 가야하는 데 생후 28개월 된 아들이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코와 입을 막고 명치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등 부모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아동학대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게임중독은 ‘충돌조절’의 장애를 일으켜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와 같은 폭력을 가하게 되고, 가상세계에 빠져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아동을 방치하는 방임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고 있다.

1.4 Abuse of mental disorder

정신병리학적 관점은 친부모의 정서적인 특과 성격구조상의 결함을 중심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친부모는 일반적인 부모들과 다른 정서적인 특성과 성격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그 외 사회·경제적·인구학적 특성은 그러한 행위를 촉진하는 간접적인 요소일 뿐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Steel과 Pollock(1971)에 따르면 학대하는 부모들은 광범위한 양상의 정서적 혼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으로 신경증, 불안, 우울 등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학대행위를 하는 부모들이 이러한 정서·심리·성격적 특성을 보이는 주된 원인은 어린 시절의 성장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그들이 성장해오면서 부모로부터 비난받거나, 무시당하고, 무분별한 처벌이나 복종 등을 과도하게 받음으로써 비정상적인 심리 및 성격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경험은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같은 패턴의 행위 유형으로 나타나기 쉬운데, 이것이 곧 학대가 대물림되는 현상이다. 즉, 아동기 때 학대를 받으며 내적으로 쌓여 있던 분노와 같은 심리적 압박감을 자신의 자녀를 학대함으로써 해소하기도 하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친부모의 정신병리적 문제는 아동학대가 친부모의 병리적 특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친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양육태도는 그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되어 악순환 됨을 지적하고 있다[14].

2. The Actual Condition of Abused Child Parents

2.1 Analysis of the report submission status by year

아래 <표1>에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2001년 10월에 설립되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64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담원 직무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기관에서 매년 발간되는 전국아동학대보고서는 전국에서 발생하여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집계한 통계자료로서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수치를 가장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 논문에서의 현황 분석에 자료로 활용하였다. 2004년의 경우는 18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설되면서 신고접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2011년에는 처음으로 신고접수 건수가 1만 건을 상회했다. 특히 2014년에는 36.0%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3년 10월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결되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되면서 2015년의 전년 대비 8.0%로 증가율이 상승하였다 2017년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두드러지면서 아동학대 및 예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작년 대비 신고접수건수가 15.1% 증가하였다[1].

Table 1. Number of reports received by year

(unit: Number, %)

division year	Number of applications	Growth rate compared to last year	Remarks
2001	4,133	-	
2002	4,111	-0.5	
2003	4,983	21.2	
2004	6,998	40.4	Child Protection Agency Expansion of 18
2005	8,000	14.3	
2006	8,903	11.3	
2007	9,478	6.5	
2008	9,570	1.0	
2009	9,309	-2.7	
2010	9,199	-1.2	
2011	10,146	10.3	
2012	10,943	7.9	
2013	13,076	19.5	
2014	17,782	36.0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Enactment
2015	19,203	8.0	
2016	29,671	54.5	
2017	34,166	15.1	Designate as a national task

※ 출처 : 중앙아동전문기관, 2018 참고.

2.2 Relationship between abusive actor and victim child

2017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22,367건을 대상으로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73.3%(친부(42.8%), 친모(30.5%), 계부와 계모는 각각 401건(1.8%), 341건(1.5%)) 해당하는 16,476건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abusive actor and victim child

(unit: Number, %)

relationship		Number(%)	
parents	Father	9,652	(42.8)
	Mother	6,824	(30.5)
	Step father	401	(1.8)
	Step mother	341	(1.5)
	Foster father	28	(0.1)
	Foster mother	21	(0.1)
	sub Total	17,177	(76.8)
Relative	1,067	(4.8)	
Agent of nurture	3,343	(14.9)	
Other person	294	(1.3)	
Others	441	(2.0)	
Not understood	45	(0.2)	
Total	22,367	(100.0)	

※ 출처 : 중앙아동전문기관, 2018 참고.

물론 우리나라 전체 가족형태 가운데 친부모가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표와 같은 결과가 당연하게 해석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73.3%라는 수치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오늘날 친부모에게서조차 심각한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다.

IV. Conclusion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심각한 인구문제로서, 아동의 인구는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아동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심각한 국가적 문제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사회는 친부모 가정에 대하여, 재혼가정 및 입양가정 등에 비해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문화적 선입견을 갖고 있었으며, 오히려 친부모이기 때문에 학대에 가까운 행위가 노출되더라도 ‘훈육’으로 보는 시각이 매우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친부모에 의한 학대피해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 질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인 재학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최악의 경우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령 강화와 같은 제도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친부모와 같이 아동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할 때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15].

따라서 친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서 향후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Measure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mily preservation

최근 빈번히 보도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분노했고, 학대 가해자가 친부모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아동복지법」을 비판하며, 오늘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함의를 바탕으로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본 법은 그동안 가정 내에서 훈육으로 여겼던 아동학대에 대하여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방지와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피해아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6]. 하지만,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학대의 은폐성, 피해의 영속성, 국가개입의 소극성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다른 범죄와 같이 국가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한 해결이 최선책이 될 수 없다.

또한, 극단적인 격리나 형사적 처벌로 인해 자신의 친부모와 갑자기 분리되어 어떠한 심리적·경제적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

는 것은 피해아동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없다[17]. 특히 아동학대범죄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이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 및 향후 피해아동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까지 관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단순 처벌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보호와 심층적 심리상담 및 치료, 피해자의 원상회복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종합 치료적 처방이 강조되고 있다[17].

첫째, 아동학대행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 일반적 예방 관점에서 1차적으로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비 부모교육 및 아동학대 인식 교육, 부모역할 교육 [18]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만약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맞춤형 개별 상담과 동시에 지역 내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아동학대 범죄의 장기화 및 고착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의 결정 전 조사(제25조) 및 조건부 기소유예(제26조), 그리고 보호관찰(제36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의 형사처벌과 친권제한 등의 강제조치는 오히려 아동의 정서적 안정 및 유대관계 유지를 저해하고, 원가정으로의 회복이 아닌 단절 및 악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대행위자가 친부모일 경우 학대의 은폐성, 피해의 영속성, 국가개입의 소극성 등으로 재학대의 위험이 더욱 크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의 성격이나 상태 및 가해부모의 교화가능성에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절한 심리치료와 정신치료, 약물 치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회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제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경제·취업상황, 지원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의 기능적 측면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피해를 당한 아동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이 직접 신고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신고에 의한 학대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에게는 온전히 신체를 보존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18세 미만 아동 대상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및 피해가정 지원서비스를 선행하여 학대피해아동이 친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19].

2. Measures through Family Separation

원칙적으로는 최대한 피해아동의 가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야하지만,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학대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대행위자인 친부모를 자녀와 분리하여 격리시키고, 학대해아동을 관련 전문 기관에서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7]. 이러한 조

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가장 강력한 조치로서 보다 신중해야 하며 친부모와 분리되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부모가 사망하여 부재하는 경우 시설에 입소하였으나, 최근에는 부부갈등 등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거나 경제적 위기로 인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시설 입소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적 양육수단으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때문에 법원에서도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결국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와 재학대 위험에 다시 노출되는 악순환을 의미하는바[20], 학대피해아동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문제 및 대상별로 보다 전문화된 아동양육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항에서는 가정위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학대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상담 및 치료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맞춤 보호와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을 보다 늘리고,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제공을 위한 전문치료비를 책정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18].

본 연구는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현황과 원인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유형화시켜 보다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학대의 유형별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National Child Abuse Report for 2017,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121; p.228; pp.113-114, , November 2018.
- [2] Mary Edna Helfer, Ruth S. Kempe, "The Battered Child, 1st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 [3] Hwang Jeong-mi, "The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on Child abuse",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viii, p.130, 2018.

- [4] Choi Young-jin, "A Study on the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Child Abuse",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23, No. 4, pp.349-378, October 2015.
- [5] Park Sang-sik, Kim Doo-sang, "A project of prevention and measures on child abuse crimes", Legal Studies,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Hanyang University, Vol. 34, No. 3, pp.165-190; p.169, September 2017.
- [6] Ryu Kyung Hee, Yoon Hyun Seok, "A Study on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of Child Abuse in Criminal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Victimology studies, Vol. 24., No. 2, p.85, August 2016.
- [7] Park Ji-hye, "A study on child maltreatment by person in parental rights : focused on the legal restriction and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vi, p.121; p.108, February 2014.
- [8] Lee Won-pyo, "Case study of child abuse counseling case", Seoul Metropolitan Dongbu Child Protection Agency, 2001.
- [9] Lee Jong-bok, "The Effects of Stress Related to Parents' Life Events on Child Abuse", Daegu University Doctor's Thesis, iv, 84, 1993.
- [10] Jin Hyeon-hui,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erceived Family Stress and Emotional Child Abuse",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iii, p.65, 1993.
- [11] <https://ko.dict.naver.com/#/entry/koko/8d4e59b67d154601bd3b95c89e79eb4c>
- [12] Park En-Mi, "Effects of Childhood Abuse and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on Early Adulthood Intimate Relationship Quality",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ctoral thesis, 1999.
- [13] Oh Swng-Hwan,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child's ecologic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001.
- [14] Yoe Jin-ju,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 the case of abused children reported to a childcare establishment", Daegu Chathoric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15] Kim Hee Young, Yoon Hyun Seok, "Affect Self-esteem and Job Str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on Child Abuse Aware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7, No. 4, p.562, August, 2016.
- [16] Park Ju-Young, "Articles : Short-term Measures of Separate Protection and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s for Abused Children -Focused on the Content of the Special Act of Child Abuse", 『The Law Research institute of Hongik Univ』 Vol. 16, No. 1, p.43, February 2015.
- [17] Park Hye-Jin, "A Suggestion for the criminal policies to prevent child abus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 27, No. 3, pp.1-32, September 2017.
- [18] Kim Hyeon-sik,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children's administration", Yeungnam University Doctor's thesis, p.173; p.180, August 2017.
- [19] Kim Eun-jeong, "Child Abuse : Current Issues and Policy Ac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Forum』 No. 233, p.40, 2016.
- [20] Hyun So-Hy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Chosun law journal』 Vol. 24, No. 2, p.417, August 2017.

Authors



Chae-Hyoung Ryu received the Ph.D. degree in Police Science from Dongguk University, Korea, in 2010. She is currently apart-time lecturer in the Dept. of Police Law Administration at Gwangju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Police Administration and Crime.



Hyun-Seok Yoon received the Ph.D. degree in Police Science from Wonkwang University, Korea, in 2012. Dr. Yoon is an Expert Advisor to the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t. of Police & Law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Police Administration and Police Security.